
무배당
알리안츠변액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설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당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중에 보험금, 적립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별계정 보험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 "특별계정"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고,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제43조(약관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관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약관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단, 계약자적립금에서 약관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보험월 계약해당일"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한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이하 "월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단,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라 함은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 보험료를 말합니다.
 - 기본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 후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7항의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외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의무납입보험료"라 함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말합니다.
 - "위험보험료"라 함은 주계약에서 보험사고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특약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 계약에 해당하는 특약의 영업보험료를 말합니다.
 - "월대체공제액"이라 함은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의 영업보험료에서 수금비를 제외한 금액을 포함 합니다.
 - "증액 및 감액보험료"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으로 회사가 기본보험료의 감액 및 증액을 승낙한 경우 기본보험료와 변경된 기본보험료의 차액을 증액 및 감액 보험료로 합니다.
 - "기납입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하고 계약자가 제42조(적립액의 인출)에 의해 중도인출한 경우 기납입 보험료는 계약자적립금중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의 비율만큼 감소합니다.
- 또한,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의 해 해당 월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기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제15호의 기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하며, "특별계정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기준가격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4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최초가입시 사망 또는 별표4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1급 장해시 보장받고자 하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여야 하고,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

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증액 및 감액
2.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감액
3. 계약자 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 감액후 기납입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감액후 기납입보험료} = \frac{\text{감액직전 기납입보험료} \times \text{감액후 계약자 적립금}}{\text{감액전 계약자 적립금}}$$

주) 감액직전 기납입보험료는 이전 중도인출 또는 감액 발생시 기납입 보험료계산에 의해 산출된 직전 기납입보험료와 그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승낙여부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한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⑦ 제5항 내지 제6항에 의해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 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의 기본보험료 한도를 충족하는 기본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제1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감액 또는 증액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추후 납입되는 기본보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기본보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에 의한 월대체공제액의 변경된 사항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⑨ 제1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감액 또는 증액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⑩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중 수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 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4 참조)중 제1급 장해시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 연령】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연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31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계약체결 후 2년동안(이하 "의무납입기간"이라 합니다) 최소한 24개월분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24개월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합하여 "의무납입보험료"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의무납입기간 중 실제로 회사에 납입한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완료시까지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로 먼저 계상하고, 초과된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료로 계상합니다.
- ④ 계약자는 의무납입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해당 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⑤ 제2항 내지 제3항의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에 있어 계약자는 매월 또는 수시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서 해당월의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으면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은 최초가입시 계속 납입키로 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그러나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3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라 합니다.)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선택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입비율로 가중평균한 투자수익률)로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한 날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① 특별계정내 계약자 적립금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의무납입기간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제12조(제2회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6항에 의해 미리 납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또는 특별계정내 계약자 적립금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납입최고기간을 적용합니다.
- ⑤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 ①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연체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 ②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될 날로부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 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포함합니다]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청약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된 보험료 완납일
 2. 연체된 보험료 완납후 부활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승낙일
- 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31조(계약전 알릴의무), 제3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3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 장해시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1형(기본형)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형(80세최저사망보증형)의 경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하고, 3형(종신최저사망보증형)의 경우, 종신동안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합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으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3조 【계약자격립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계약자격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격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위험보험료, 사업비(수금비제외), 특약보험료(수금비제외))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격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2형, 3형에 한함)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제24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격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펀드의 유형 및 운용】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합니다.
1. 안정형 :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만기 국공채, 특수채 기타 재예금 등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2.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3. 혼합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4. 성장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② 펀드 운용은 제1항의 경우 안정형, 채권형, 성장형으로 운영하고, 제2항, 3항의 경우 채권형, 혼합형으로 운용합니다.

③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및 간접투자자산운용 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6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적립금 이전】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판매중인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 경과후부터 보험연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 또는 제27조(펀드의 자동재배분)에 의한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펀드 적립금 이전시에는 10만원이상 이전하여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의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0조(특별개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와 5,000원 중 큰 금액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4항의 현금 이전시 공제합니다.

제27조 【펀드의 자동재배분】

①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매 6개월 단위로 자동재배분됩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로부터 매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제28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개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개정별로 적용됩니다.

② 특별개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29조 【특별개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개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개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개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개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 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개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개정의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개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개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개정운용보수, 특별개정수탁보수 및 최저시망보증비용(2형, 3형에 한 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0조 【특별개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개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개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개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개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6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적립금이전)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1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1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삐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제31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3조 【계약 취소권의 행사제한】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4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6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9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3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1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42조 【적립액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보험기간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약관대출금 차감)의 50%범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5,000원 중 큰 금액내에서 회사가 정한금액으로 하며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합니다. 단,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동안 2회까지 인출가능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후 기납입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인출후 기납입보험료} = \text{인출전 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전 계약자격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전 계약자격립금}}$$

③ 제1항에 의하여 중도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중도인출금은 인출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되, 추가보험료 적립금에서 먼저 인출하고, 추가보험료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기본보험료 적립금에서 부족금액을 인출하여 이체 처리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금액은 인출후 특별계정내 계약자격립금이 2개월분 월대체 공제액과 500만원 이내 중 회사가 정한 큰 금액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약관 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약관대출금액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펀드 적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약관대출이율-1.5%로 부리 적립합니다. 단, 계약자에 의한 약관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을 한 날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약관대출적립금에서 제외됩니다. 상환금액의 펀드별 분배금액은 상환일의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을 따릅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접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8조 【계약자격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5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1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5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종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종 제1급 장해시	계약보험가입금액 + 계약자 적립금

-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5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1형의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한 최저보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형의 경우 80세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합니다.
 3형의 경우 종신동안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합니다.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1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표 3)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제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V01-V09
2.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V19
3.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V29
4.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V30-V39
5.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V49
6.운수사고에서 다친 피업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V59
7.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V69
8.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V79
9.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V89
10.수상 운수사고	V90-V94
11.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V97
12.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13.추락	W00-W19
14.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W49
15.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W64
16.불의의 물에 빠짐	W65-W74
17.기타 불의의 흐름 위험	W75-W84
18.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W99
19.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X00-X09
20.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X19
21.유독성 물질 및 식물과의 접촉	X20-X29
22.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23.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24.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X59

분류항목	분류번호
25. 가해	X85-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증 환자의 재난	Y60-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질병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은 재해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증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순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킬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쌍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도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도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분류 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1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

- 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 수단(휠체어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애, 굴절 장해, 안구운동장애, 조절장애,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ㅌ), 구개음(ㅊ,ㅋ), 후두음(ㆁ,ㆁ)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증후군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대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frac{1}{2}$ 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Sigma \frac{\text{운동종류별장해후운동범위}}{\text{운동종류별정상운동범위}} \times \text{비례치}$)이 $\frac{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정도와 운동기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frac{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frac{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또는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瘻: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될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4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조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전환전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피보험자의 연령이 전환 계약의 가입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④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 6조 【계약자의 의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8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0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액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전쟁 ,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기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6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의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사망보험금(약관 제12조)

지급사유	지급액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별표2)

재해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별표3)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종에서 신체장애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 하였을 때
제4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등급	신체장애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4.“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

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애, 굴절 장해, 안구운동 장해조절 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주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원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0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sum \frac{\text{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text{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times \text{비례치}$)이 1/20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잠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척추의 고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0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척추의 중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0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척추의 경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0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손가락의 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줄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 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21.“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1 【 】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 이체 납입으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5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6 【 】

- 가 1 가 1 . 10 ()
 가 1 . 2 ()

7 【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8 【 】

- 1 2 . .

 (" ")

9 【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10 【 】
) 1 가 1 (2 () " " () " " (1 " ") (3

11 【 】

- 10 가 , , , 27 () 2

10	180	180
3 가	()	() 2 가
12 【 1. 가 2. 가 3. 가 1. 1 1 2. 1 2 3. 1 3	가 가 가 가	가

13 【]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14 【]**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5 【]

-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의 지급지연을 수의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5**16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10)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별표2)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 (별표3)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3)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도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도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연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학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 있다 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약관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될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조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특약의 전환 당시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입연금 협약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피보험자의 연령이 전환 계약의 기입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④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 6조 【계약자의 의무】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에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8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0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가족수입연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장해등급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④ 제 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가족수입연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하 “보험금 지급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는 가족수입연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족수입연금의 지급기간이 5년미만이 될경우 보험금지급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가족수입연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⑦ 가족수입연금의 경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기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6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의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계산”과 같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가족수입연금(약관 제12조)

지급사유	지급액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매월 10만원 (최소 5년간 보증지급)

(별표2)

재해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별표3)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구분		부리기간	지급이자
가족수입 연금 (제12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6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신재해장해보험특약 약관

1 【】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 이체 납입으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2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6 【】

가

11 (

) 7

1

1

가

.

2

()

7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8 【】

(" ")

1 2

9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10 【】

6 (" ") (2) 가

(" ") (" ")

가 ((3) 2 "

11 【】

10 ()

2 (10) . 가
4 . 가 2
가 .
4 . 가 .
1 . 1 () .

12 【】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혜택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혜택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3 【 】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4 【 】

13 ()
1 10

12	()	1			
1.	가	.	: 1	50%, 1	1%
2.	.	.	: 1%		

5

15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10)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제3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제4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제5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제6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별장2)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별표3)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3)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약관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조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특약의 전환 당시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될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피보험자의 연령이 전환 계약의 기입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④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 6조 【계약자의 일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8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0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에 따라 특약보험가입금액에 보험년도별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3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6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의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가. 지급사유(약관 제12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나. 지급액

① 7년만기		② 10년만기		③ 15년만기		④ 20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1년미만	100.0%	1년미만	100.0%	1년미만	100.0%	1년미만	100.0%
1년이상 2년미만	85.7%	1년이상 2년미만	90.0%	1년이상 2년미만	93.3%	1년이상 2년미만	95.0%
2년이상 3년미만	71.4%	2년이상 3년미만	80.0%	2년이상 3년미만	86.7%	2년이상 3년미만	90.0%
3년이상 4년미만	57.1%	3년이상 4년미만	70.0%	3년이상 4년미만	80.0%	3년이상 4년미만	85.0%
4년이상 5년미만	42.9%	4년이상 5년미만	60.0%	4년이상 5년미만	73.3%	4년이상 5년미만	80.0%
5년이상 6년미만	28.6%	5년이상 6년미만	50.0%	5년이상 6년미만	66.7%	5년이상 6년미만	75.0%
6년이상 7년미만	20.0%	6년이상 7년미만	40.0%	6년이상 7년미만	60.0%	6년이상 7년미만	70.0%
		7년이상 8년미만	30.0%	7년이상 8년미만	53.3%	7년이상 8년미만	65.0%
		8년이상 9년미만	20.0%	8년이상 9년미만	46.7%	8년이상 9년미만	60.0%
		9년이상 10년미만	20.0%	9년이상 10년미만	40.0%	9년이상 10년미만	55.0%
				10년이상 11년미만	33.3%	10년이상 11년미만	50.0%
				11년이상 12년미만	26.7%	11년이상 12년미만	45.0%
				12년이상 13년미만	20.0%	12년이상 13년미만	40.0%
				13년이상 14년미만	20.0%	13년이상 14년미만	35.0%
				14년이상 15년미만	20.0%	14년이상 15년미만	30.0%
						15년이상 16년미만	25.0%
						16년이상 17년미만	20.0%
						17년이상 18년미만	20.0%
						18년이상 19년미만	20.0%
						19년이상 20년미만	20.0%

(별표2)

재해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별표3)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약관

1

1 【】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이 송인될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 】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3 【】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5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6 【 】

1. 가 가

31

()가

1

1

가

2

(

1

7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8 【 】

1

2

9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10 【 】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 】

가) (1 “ ”) . 4 (“ ”

12 【 】

11 () 가 1 120
11 () . 2 . 1
2 . . 180

가 11 () .

가
가

13 【 】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4 【 】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5 【 】

14 () . , 10 3
1 . . 7

13 () 1

1. 가 : 1 50%, 1
2. : +1% 1%

5

16 【 】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보험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2. 이 특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질병으로 인한 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의 합계가 730일을 초과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한 경우
3. 갱신된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연령이 70세가 되는 날을 초과하는 경우
③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④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⑤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원일수 산정은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이 특약의 갱신시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17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1)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별표2)

질병 및 재해분류표

▣ 제 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 시행)에 의함.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 - B99
2. 신생물	C00 - D48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 - D89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 - E90
5. 신경계통의 질환	G00 - G99
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 - H59
7.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H60 - H95
8. 순환기계통의 질환	I 00 - I 99
9. 호흡기계통의 질환	J00 - J 99
10. 소화기계통의 질환	K00 - K93
11.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L00 - L99
12.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 - M99
1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N00 - N99
14.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 - O99
15.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 - P96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 - R99
1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 T98
1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 제제에 의한 사고	V01 - Y98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재해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 다음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정신장해(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볼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 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를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4 참조)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摘除)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1종류의 수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수의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수술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5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술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의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특약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수술급여금 (약관 제 11조)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지급액	1종수술 20만원
	2종수술 50만원
	3종수술 100만원

(별표2)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약관 (별표2) “질병 및 재해 분류표” 와 동일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별표4)

수술분류표

*	(皮膚乳房 手術)	(植皮術) (25cm ²)	2
1.	(乳房切斷術)		2
*	(筋骨 手術) [(拔釘術)]		2
3.	(骨移植術)		2
4.	(骨髓炎骨結核手術) [(膿瘍)]		2
5.	(頭蓋骨觀血手術) [. (鼻骨.鼻中隔)]		2
6.	(鼻骨 觀血手術) [(上顎骨.下顎骨.顎關節 觀血手術) [. (齒齒肉)]]		1
7.			2
8.	(脊椎 骨盤 觀血手術)		2
9.	(鎖骨.肩胛骨.肋骨.胸骨 觀血手術)		1
10.	(四肢切斷術) [가 . 가]		2
11.	(切斷四肢再接合術) [. (骨關節) (離斷)]		2
12.	(四肢骨.四肢關節 觀血手術) [가 . 가]		1
13.	(筋腱韌帶 觀血手術) [가 . 가] (筋炎.結節腫粘液腫手術) []		1
*	(呼吸器.胸部 手術)		
14.	(慢性副鼻腔炎 根本手術)		1
15.	(喉頭全摘除術)		2
16.	(氣管氣管支肺.胸膜手術) [(開胸術)]		2
17.	(胸郭形成術)		2
18.	(縱隔腫瘍 摘出術)		3
*	(循環器.鼻 手術)		
19.	(觀血的血管 形成術) [(血液透析用) SHUNT (形成術)]		2
20.	(靜脈瘤 根本手術)		1
21.	(大動脈.大靜脈.肺動脈.冠動脈手術) [. (開胸.開腹術)]		3
22.	(心膜切開.縫合術)		2
23.	(直視下心臟內手術)		3
24.	(體內用) Pace Maker (埋込術)		2
25.	(鼻擰除術)		2
*	(消化器 手術)		
26.	(耳下腺 腫瘍 摘出術)		2
27.	(頸下腺腫瘍 摘出術)		1
28.	(食道離斷術)		3
29.	(胃切除術)		3
30.	(胃.食道手術) [. (開胸.開腹術)]		2
31.	(腹膜炎手術)		2
32.	(肝臟.膽囊.膽道.脾臟 觀血手術)		2
33.	(脫腸 根本手術)		1
34.	(蟲垂切除術.盲腸縫縮術)		1
35.	(直腸脫 根本手術)		2
36.	(腸腸間膜手術) [(開腹術)]		2
37.	(痔瘡.脫肛.痔核 根本手術) [(根治) (痔核)]		1
*	(尿性器 手術)		
38.	(腎移植手術) [(受容者)]		3

수술명					수술종류분류(종)
39.	(腎臟腎盂尿管膀胱 觀血手術)	[(經尿道的 操作)]	2
40.	(尿道狹窄觀血手術)[(經尿道的 操作)]		2
41.	(尿囊閉鎖 觀血手術)[(經尿道的 操作)]		2
42.	(陰莖切斷術)				3
43.	(塞丸副塞丸精管精索 精囊前立腺手術)				2
44.	(陰囊水腫 根本手術)				1
45.	(子宮廣汎全摘除術) [(單純子宮全摘)	(全摘除術)]	3
46.	(子宮頸管形成術子宮頸管縮縮術)				1
47.	(帝王切開娩出術)				1
48.	(子宮外妊娠手術)				2
49.	(子宮脫離脫手術)				2
50.	(子宮手術)[Polyp		(子宮頸管 Polyp 切除術人工妊娠中絶術)]	2
51.	(卵管卵巢 觀血手術)[(經瘤的操作)]		2
52.	(卵管卵巢手術)				1
*	(內分泌器 手術)				
53.	(下垂體腫瘤摘除術)				3
54.	(甲狀腺手術)				2
55.	(副腎全摘除術)				2
*	(神經 手術)				
56.	(頸蓋內 觀血手術)				3
57.	(神經 觀血手術)[(形成術移植術切除 術減壓術開放術捻除術)]	2
58.	(觀血的脊髓腫瘤 摘出手術)				3
59.	(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2
*	(感覺器視器 手術)				
60.	(眼瞼下垂症手術)				1
61.	(淚小管形成術)				1
62.	(淚囊鼻腔 吻合術)				1
63.	(結膜囊形成術)				1
64.	(角膜移植術)				1
65.	(觀血的前房虹彩硝子體眼窩內異物除去術)				1
66.	(虹彩前後瘻着剝離術)				1
67.	(線內障 觀血手術)				2
68.	(白內障水晶體 觀血手術)				2
69.	(硝子體 觀血手術)				1
70.	(網膜剝離症手術)				1
71.	Laser. (冷凍凝固) (眼球手術) [(施術) 60 1]				1
72.	(眼球摘除術組織充填術)				2
73.	(眼窩腫瘤 摘出手術)				2
74.	(眼筋移植術)				1
*	(感覺器聽器 手術)				
75.	(觀血的鼓膜鼓室形成術)				2
76.	(乳樣洞削開術)				1
77.	(中耳 根本手術)				2
78.	(內耳 觀血手術)				2
79.	(聽神經腫瘤 摘出手術)				3
*	(惡性新生物 手術)				
80.	(惡性新生物 根治手術)				3
81.	(惡性新生物 溫熱療法) [(施術) 60 1]				1
82.	(惡性新生物 手術)				2
*	(上記 以外 手術)				
83.	(開頭術)				2
84.	(開胸術)				2
85.	(開腹術)				1
86.	(衝擊波) (體內結石破碎術) [(施術) 60 1]				2
87.	Fiberscope (血管) Basket Catheter [(施術) 60 1]		(腦喉頭胸部腹部臟器手術)		1
*	(新生物根 治放射線照射)				
88.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5,000Rad	(照射) (施術) 60 1]				1

(주) 1.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미용성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진단.검사[생검, 복강경 검사 (生檢, 腹腔鏡 檢查)등]를 위한 수술 등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상기 「手術分類表」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手術分類表」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무배당 건강보장특약 약관

1

1 【 】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으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이하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5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6 【 】

가
가
2
2
(
)

7 【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8 【 】

(" ")

1 2

9 【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10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1 【 】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조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2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신부전”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말기신부전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하는 말기신질환으로서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고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신장이식의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그 말기신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② 말기신부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신장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신장이식은 상기의 병원 또는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13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간경화”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간경화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간기능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간초음파검사,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4 【 】

1.	가	:	가	“ ”	(1)
2.	가	:	가	“ ”	(1)
3.	가	:	가	“ ”	(1)
4.	가	:	가	“ ”	(1)

15 【 】

(2)	2	3	가	,	1	,	가	.
14 (1)	(7)	180	(" ")	,	1	,	가	180
3							가	.
가			14 ()				가	.

16 【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7 【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및 납입면제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8 【 】

17 ()	,	,	,	,	3	10
1					7	.
16 () 1						.
1.	가	:	1	50%, 1		1%
2.		:	+1%			.

5

19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4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0만원	

(14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0만원	

(14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말기신부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 2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500만원	

(14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간경화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 2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500만원	

(주)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별표2)

장해등급 분류표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별표3)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말기신부전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말기신부전”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말기 콩팥(신장)병	N18.0
------------	-------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간경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간경화”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1.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경화증	K70.2
2. 알콜성 간경화, 알콜성 경화	K70.3
3. 간의 섬유증 및 경화	K74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7)

재해 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별표3) “재해분류표” 와 동일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 약관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 이체 납입으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이하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的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보장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 【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이전에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的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조 【특약 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암” 및 “기타피부암”的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또는 “기타피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때 : 진단급여금

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때 : 수술급여금

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때 : 입원급여금

제1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거나 피보험자가 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2참조)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나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진단급여금은 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그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⑥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⑦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⑧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⑨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라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⑩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원확인서, 수술증명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및 납입면제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의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진단급여금 (약관 제14조 제1호)

지급사유	지급액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1년이상	1,000만원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미만	150만원
	경과기간 1년이상	300만원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미만	50만원
	경과기간 1년이상	100만원

◆ 수술급여금 (약관 제14조 제2호)

지급사유	지급액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하여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최초 1회 300만원
	2회 이후 30만원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하여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최초 1회 90만원
	2회 이후 30만원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하여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30만원

◆ 입원급여금(약관 제14조 제3호)

지급사유	지급액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5만원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2만원

1. 제11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입니다.

2. 제11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암의 정의에서 기타피부암은 제외되므로, 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고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별표2)

장해등급분류표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 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괴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 눈, 뇌 및 중주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1..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3. 전암병소, 심장, 수막, 뇌-중추신경계 양성신생물(분류번호 D15.1, D32, D33)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흐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흉곽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진성 저혈구 증후군	D45
10. 클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암진단특약 약관

무배당 암진단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 이체 납입으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이하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보장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 가 () 가 .

제3조 【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이전에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9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암” 및 “기타피부암”的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 및 “기타피부암”的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상피내암”的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습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습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진단급여금 지급(최초 1회에 한함)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상피내암진단급여금 지급(최초 1회에 한함)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지급(최초 1회에 한함)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지급(최초 1회에 한함)

제1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시, 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2 참조)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나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진단급여금은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호의 경우 재해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그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재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16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및 납입면제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① 암진단급여금 (약관 제14조 제1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1000만원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500만원)

② 상피내암진단급여금 (약관 제14조 제2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100만원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50만원)

③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약관 제14조 제3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300만원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최초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50만원)

④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약관 제14조 제4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100만원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최초의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50만원)

주) 1.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2.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암의 정의에서 기타피부암은 제외되므로, 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표2)

장해등급분류표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의 약관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 와 동일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의 약관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와 동일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의 약관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와 동일

(별표6)

재해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 (별표3) “재해분류표” 와 동일

무배당 어린이보장특약 약관

무배당 어린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제10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제1항에서 정한 “암” 보장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중 1인으로 합니다.
1. 주계약의 피보험자
 2.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중 1인
 3. 주계약 피보험자의 자녀
- ② 특약의 체결 후에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을 제외한 원인으로 제1항 제3호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이 특약은 해지 됩니다.

제3조 【특약 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기타 피부암 제외)”(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 및 “기타피부암”的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8 참조)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체(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 【골절의 정의】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골절 분류표(별표9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6조 【상실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상실(喪失)이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거(拔去)하거나 우식증(齲齒症) 또는 외인에 의하여 치아를 뿌리까지 손상되어 치아의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치아교정을 위하여 발거하는 경우와 제3대구치를 발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이하 “상실”이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시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 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지급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진단급여금 지급(최초 1회에 한함)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지급(최초 1회에 한함)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상피내암진단급여금 지급(최초 1회에 한함)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지급(최초 1회에 한함)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여금 지급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골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골절치료비 지급(사고당 1회에 한함)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영구치아를 상실했을 때 : 치아치료비 지급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확정시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은 면제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또 다른 암 진단시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암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의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급여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⑨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6호의 진단급여금은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⑩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7호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1종류의 수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⑪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⑫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⑬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⑭ 계속입원이라면 중도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⑮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는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⑯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⑰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9호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 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⑱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0호의 경우 가입당시의 영구치아고지서에 의한 건강한 영구치아 및 책임개시일 이후 출출한 영구치아에 한하여 이 악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입당시의 영구치아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한 경우에는 영구치아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책임을 집니다.

⑲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6호의 진단급여금 중 그 질병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19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악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1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 진단서, 수술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3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의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6관 기타사항

제24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① 사망보험금 (약관 제17조 제1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금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 · 만15세미만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만15세이상 : 1,000만원

② 장해급여금 (약관 제17조 제2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장해등급	지급금액
	제1급	2,000만원
	제2급	1,500만원
	제3급	1,000만원
	제4급	500만원
	제5급	300만원
	제6급	100만원

③ 암진단급여금 (약관 제17조 제3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1,000만원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500만원)

④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약관 제17조 제4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100만원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최초의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50만원)

⑤ 상피내암진단급여금 (약관 제17조 제5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100만원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50만원)

⑥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약관 제17조 제6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300만원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최초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50만원)

⑦ 수술급여금 (약관 제17조 제7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금액	1종 수술 (수술 1회당) 20만원
	2종 수술 (수술 1회당) 50만원
	3종 수술 (수술 1회당) 100만원

⑧ 입원급여금 (약관 제17조 제8호)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지급금액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⑨ 골절치료비 (약관 제17조 제9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사고당 1회에 한함)
지급금액	20만원

⑩ 치아치료비 (약관 제17조 제10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영구치아를 상실했을 때 (단 제3대구치 제외)
지급금액	영구치 1개당 20만원

주) 1. 제10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2. 제10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암의 정의에서 기타피부암은 제외되므로, 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별표3)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 약관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 와 동일

(별표5)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 약관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와 동일

(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 약관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와 동일

(별표7)

질병 및 재해분류표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약관 (별표2) “질병 및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8)

수 솔 분 류 표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별표4) “수술분류표” 와 동일

(별표9)

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
2. 목의 골절	S12
3.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4.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5.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6. 아래팔의 골절	S52
7.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8. 넙적다리뼈의 골절	S72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1.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2.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3.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14.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15.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개시일로 합니다.(이하 책임개시일을 이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전환전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일 전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	개인계약(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부부계약(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상속형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 부부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개인계약의 경우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등)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합니다.
2.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등)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부부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부부계약의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부부계약은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이나 확정연금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계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 이라 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시기】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 【해약환급금의 지급】

- ① 이 특약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분기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해분기 말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2.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제9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의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2조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 중 『약관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 생존연금(약관 제7조)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소득보장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2) 부부계약

주 피 보 험 자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 급 액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종 피 보 험 자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회 보증지급 기간 내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나. 확정연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지급액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다. 상속연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 지급 단, 상속연금의 지급시기는 연단위 연금연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지급하며, 분할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월 선택시에는 만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월, 3개월 선택시에는 만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매3개월마다, 6개월 선택시에는 만6개월 경과시점부터 매6개월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1.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2. 「공시이율」(연복리 2.5%를 최저보증)은 매분기 1일(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3. 종신연금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구분	부리기간	지급이자
생존연금 (제7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약관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자 계산합니다.

2. 계약자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약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이라 합니다.
- ②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 (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③ 특약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3조 (특약의 부가조건)

- ①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割増危險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보험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 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80%	60%
4년이상 5년미만						8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연령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연령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 (危險指數)가 실제 n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율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연령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併用)할수 있습니다.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 됩니다.

제 5조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 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을 체결 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2)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1)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종의 경우는 제2항 제1호의 조건을 부가하고 2종의 경우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부가합니다

(2)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로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별표1 "특정부위 분류표"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 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2. 별표2 "특정질병분류표"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 (이하 "특정질병" 이라 합니다)

(3)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인의 질병의 상태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7) 제2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2개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해지특약의 부활】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2)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특정부위분류표

구 分	특 정 부 위
1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2	맹장(총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3	직장 또는 항문
4	간장, 담낭 또는 담관
5	췌장
6	기관, 기관지, 폐, 흉마 또는 흉곽
7	코(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8	인두 또는 후두
9	구강,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 또는 설하선
10	귀 (외이, 고막, 중이, 내이, 청신경 및 유양돌기 포함)
11	안구 또는 안구부속기 (안검, 결막, 누기, 안근 또는 안와내조직 포함)
12	신장
13	요관, 방광 또는 요도
14	전립선
15	유방 (유선 포함)
16	자궁 (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17	난소 또는 난관
18	고환 (고환초막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19	갑상선
20	경주부 (해당신경 포함)
21	흉주부 (해당신경 포함)
22	요주부 (해당신경 포함)
23	선골부 또는 미골부 (해당 신경 포함)
24	좌견관절부
25	우견관절부
26	좌고관절부
27	우고관절부
28	좌상지 (좌견관절부 제외)
29	우상지 (우견관절부 제외)
30	좌하지 (좌고관절부 제외)
31	우하지 (우고관절부 제외)
32	자궁체부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33	서혜부 (서혜 헤르니아, 음낭 헤르니아 또는 대퇴 헤르니아가 생긴 경우에 한함)
34	신도
35	대장 (맹장 및 직장 제외)

(별표2)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질병으로 분류된 질병은 제4차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 分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심장질환	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2	뇌혈관질환	I60 ~ I69
3	당뇨병	E10 ~ E14
4	고혈압	I10 ~ I14
5	결핵	A15 ~ A19 B90

* 제5차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 (별표3) “재해분류표” 와 동일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조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제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7조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약관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1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13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금 수의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호적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13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5.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7.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①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7조(다른 특약의 취급)의 규정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⑤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16조 【다른 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체취급특약 약관

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 【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이 단체취급 특별협약(이하 “단체취급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통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통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보통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동업자단체(변호사회, 의사회 등)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단체(이하 “단체”라 합니다)에 소속한 보통보험 계약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통보험계약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 【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3조 【보험료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단체취급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 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로 간주합니다.

3.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급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통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 【보통보험 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보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